

# 현명한 재산관리는 ?

미국의 한인들은 높은 유산세와 유언 검증비로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기고 있다.

## ❖ Estate Planning (유산 계획) 은 어떤 것이고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Estate Planning 법은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법으로 재산, 세금, 상업 계약, 보험, 가족법 등 많은 법을 알고 있는 특별한 변호사만이 세울 수 있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장 많은 유산을 자손에게 남기도록 세우는 계획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내의 한인들 중에서는 아주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부유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를 모으는데만 신경을 쓰고 미국유산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그토록 어렵게 모은 재산이 그들의 자녀가 아닌 Estate tax 와 Probate 비로 소요 될수있다는 것을 생각 하시지 못하십니다. 아직 이런 재산 보호 및 유산 계획이나 세금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미주내의 한국 분들과 그들 가족에게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분들이 미리미리 유산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Estate tax 와 Probate 비를 물지 않게 도와 드리고 싶습니다.

Estate tax 와 Probate 비를 피하는 유산계획은 상당한 혜택들이지만, Estate Planning 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혜택들이 크게 또는 작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사후에 상속자들이 당신의 재산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iving Trust (생전신탁)을 설립 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 당신이 먼저 사망하고 당신의 배우자가 재혼을 하여도 당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재혼한 사람들의 새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이전 배우자의 재산을 남용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 ▶ 당신들의 유산을 상속자채권자들로 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 ▶ 병고등으로 인하여 당신이 무력화되었을 때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자녀들이 유산을 잘못관리하지 않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 자녀들이 이혼을 할 때에도 유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 자녀들이 건강문제로 국가에서 주는 정부 혜택/건강보험혜택을 받으면서도 유산의 혜택을 누릴수

\*\*\*This information should not be construed as providing specific legal advice. Your personal situation, property, and liabilities will differ from the illustrations used herein. All calculations are estimates, and all information applies to U.S. Permanent Residents and Citizens only.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attorney for information specific to your needs. © 2015 LAW OFFICES OF ERNEST J. KIM

있도록 생전신탁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 당신의 손주들뿐만아니라 그들의 후세대까지도 교육자금, 증여금등의 신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하여 후세대에게 교육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 ▶ 자녀들이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 ▶ 자녀들/가족 사이에 재산분쟁을 막을수 있습니다.

❖ **Probate (유언검증) 이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미국에서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Probate** 이란 법적 절차입니다. 당신이 살아있을때 당신의 재산은 모두 당신(주인) 이름으로 서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Probate** 을 거치지 않고서는 당신의 재산을 유가족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Probate** 은 적게는 1년에서 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당신의 재산은 당신의 유가족이 아닌 법정이 임시로 관리 하게 됩니다. 아무도 당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고 팔수 없고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 자녀의 학비까지도 그들이 허가를 해야 돈이 지급됩니다.

**Probate** 는 까다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는 처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또 이 절차에 드는 모든 비용은 당신의 유가족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유언 검증비는 당신이 남긴 집이 \$500,000 짜리인데, 유가족이 이 집을 팔았을 때 \$100,000 이 그들 몫이고 \$400,000 이 은행

것이어도 유가족은 \$500,000 에 대한 유언 검증비를 물게 됩니다.



**Table of Estimated Probate Fees:**  
(Statutory Attorney fees, plus Court-Appointed Administrator/Executor fees, in California)

재산 (Gross)	Probate Fee
\$100,000	\$8,000
\$200,000	\$14,000
\$500,000	\$26,000
\$1,000,000	\$46,000
\$1,500,000	\$56,000
\$2,000,000	\$66,000
\$2,500,000	\$76,000
\$3,000,000	\$86,000
\$3,500,000	\$96,000
\$4,000,000	\$106,000
\$4,500,000	\$126,000
Etc. ↑	Etc. ↑

❖ **Estate Tax (유산세) 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Estate tax** 가 위에서 말한 **Probate** 다음으로 거쳐야 할 두 번째 과정입니다. 당신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IRS 는 매년 4 월 15 일 소득세를 걷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남긴 재산이 \$5,430,000 이상 (2015 년에 고정된 면제액 - 한 사람당 \$5,430,000) 된다면 당신의 자녀들은 **Estate tax** 를 내야만합니다. **한국 시민권자 (비 거주 의제인) 일 경우 \$60,000 까지만 유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IRS

\*\*\* THIS NEWSLETTER SHOULD NOT BE CONSTRUED AS PROVIDING SPECIFIC LEGAL ADVICE. ALL NUMBERS ARE ESTIMATES AND HAVE BEEN ROUNDED TO THE NEAREST THOUSANDS FOR EASE OF REFERENCE. DEPENDING ON MANY FACTORS, YOUR ESTATE TAX AND PROBATE FEES COULD BE DIFFERENT FROM THE CHARTS AND ILLUSTRATIONS HERE. PLEASE CALL FOR A FREE CONSULTATION WITH US FOR INFORMATION SPECIFIC TO YOUR NEEDS. ©2015

는 매년 당신으로부터 소득세를 걷고도 당신이 죽은 후에도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에서 또 “Estate tax”를 걷는 것입니다. 한가지 Estate tax가 probate 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Estate tax는 당신 재산의 실제 가격, Net Worth (예를 들어 \$500,000 집 가격 중에서, \$400,000 이 은행 것, 당신의 실제 재산 \$100,000)에 대한 퍼센티지를 계산합니다.

2015년 부터 Estate tax 법은 사망자의 재산은 한 사망자당 \$5,430,000까지는 tax free (Estate tax가 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재산이 \$6,000,000 이라면, 당신의 자녀들은 \$6,000,000 - \$5,430,000 = \$570,000에 대한 Estate tax를 IRS에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Living Trust (생전신탁) 계획만 잘하신다면 부부가 (\$5,430,000 X 2) = \$10,860,000까지 자녀에게 Estate tax 없이 tax free 물려주실 수가 있고 Living Trust 외에도 여러 가지 유산 계획 방법 중에서 당신 가족과 재산에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서 이용한다면 전체 재산을 자녀들에게 Estate tax 없이 물려주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획은 부부가 생존해 있을 때 세우셔야 최대한 효과가 있게 됩니다.

### ❖ Community Property (부부 공동의 재산)이란 무엇인가?

Community Property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소유한 재산을 말합니다. California 주에서는 결혼한 동안 부부가 모은 50%는 남편 50%는 아내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separate property “개인” 재산). 결혼 생활 중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고 그 재산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몇 가지의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유언서가 없었다면 그 재산은 유언 검증을 거치지 않고 Estate tax 없이\* 생존한 배우자의 재산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사망자의 재산이 남은 배우자에게 넘어가면 그 남은 분은 자녀에게 \$5,430,000의 재산 밖에 Tax free 남길 수 없지만 그들이 Living Trust 라는

유산계획을 생존시 세워 놓았다면 자녀에게 \$10,860,000까지 Estate tax와 Probate비 없이 남길 수가 있게 됩니다. \*공동 재산 Estate tax는 미국 시민에게만 적용됩니다. 만일 당신이 미국 영주권자나 한국 시민권자이면 일반 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미국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부부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세법을 적용해서 미국 시민이 되지 않고도 공동재산세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 Estate (유산)이란 무엇인가?

Estate는 당신이 죽기 전에 남긴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Estate는 당신 집, 가구, 차, 현금, 사업체 (기계, 물품, 영업권 등), 토지, 건물, 생명보험, 등 가치가 될만한 모든 것들이 당신의 유산에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재산은 얼마 되지 않으니 유산 계획 같은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시지만 많은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 ❖ Living Trust (생전신탁)이란 어떤 것이며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Living Trust는 아주 현명한 유산 상속 계획입니다. 부부 생존시 이런 계획을 세워 두시면 Probate이나 Estate tax와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Living Trust”란 당신이 생존시 당신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신탁 이름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 신탁의 주인으로서 부부가 생존시에 직접 그 재산을 Trustee (재산 관리인)로서 관리합니다. 사망 후 Trustee는 당신의 가족, CPA, Financial Planner, 변호사도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존 시에는 사망 후 Trustee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당신은 마음대로 당신의 재산을 팔고 사고 쓸 수 있습니다. 또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 Trustee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사망 후에야 당신의 재산 관리인의 의무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사망 후에 당신의

재산은 그 Living Trust 를 통해서 다시 살아있는 자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당신의 뜻에 따라서 그 재산을 관리해주므로 *Probate* 이라는 법적 절차는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Living Trust 설립 조건에 따라 당신의 재산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See Page 1).

❖ **Living Trust(생전신탁) 관리하기란 어려운 일인가?**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생전시에는 한번 *Living Trust* 를 세워두시면 앞에 말씀드린 세금이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부부 생전시에는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보통 하던대로 세금도 내고 청구서도 지불하면 됩니다. 또 원하시면 언제라도 *Living Trust* 를 취소 또는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당신 *Living Trust* 의 관리인 (Trustee)은 말 그대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 Trustee 는 당신이 사망한 후에야 관리인으로써의 일을 시작하고 당신의 재산을 지킴으로 사후에도 여러분의 재산에 대하여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산 상속 계획은 한번 준비하시면 큰 재산을 절약 할 수 있는 일시 투자입니다.

**나이가 어린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맡길 수 있습니까? Trust 를 사용하면 Trustee 가 (자녀가 성인 될 때까지) 재산 보호를 해줄 수 있습니다.**

❖ **Life Insurance (생명 보험)으로 받은 돈도 Estate tax 를 내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당연히 *Estate tax* 도 없을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망자가 policy owner 이면 보험 금액에서도 *Estate tax* 를 내어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생명보험을 구입하여 자녀를 Beneficiary 로 정했을 경우 자녀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보험금은 다른 상속물과 같이 취급되므로 Estate (재산 + 보험금) 가 \$5,430,000 넘을 경우 Estate tax 를 내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보호 안 되는가? 생명보험도 계획만 잘하신다면 다른 상속물과 같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을 다루는 법을 이용해서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생명보험신탁)**와 같은 특별한 계획을 적용 하신다면 생명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전체 (금액 한계 없이)** 자녀들에게 소득세와 Estate tax 없이 물려주는 것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내가 이미 Will (유언서)를 작성해 놓았다 하더라도 생전 신탁이 필요한가?**

유언서와 *Living Trust* 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유언서는 당신의 Estate Tax 나 *Probate* 비를 줄이는데 아무런 효과 없지만 *Living Trust* 는 Estate Tax 를 줄이고 *Probate* 이라는 절차가 필요 없어지게 됨으로써 시간과 돈 그리고 여러분의 심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만약 유산 상속 계획은 안 만들어 봤으나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사무실에서는 Estate Planning (유산 계획) 외에 *Probate* 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가족과

재산상태에 따라서 사망 후에 가족이 post death tax planning 을 적용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실무 분야:**

- 재산 보호
- Estate Planning
- Probate Court 절차
- Living Trust 세우기/ 관리
- Trust 또는 유산에 관한 모든종류 법정 투쟁/소송/litigation
- 잘못된 유산계계획/Trust 교정

## ❖ Practice Profile (변호사 업무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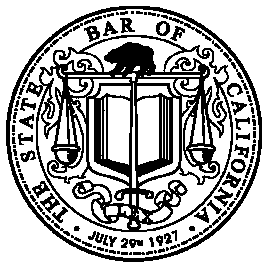


Ernest J. Kim (김준)  
변호사는 UC  
Berkeley 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Cornell  
법대에서 비즈니스와  
세금법 J. D. 학위를  
받았고 변호사 전문  
저서 California

Transaction Forms (거래 양식) by West Group 중  
“Nature & Classification of Trusts” (“신탁의  
종류”)를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Ernest Kim 변호사와, 아내 Catherine Kim  
변호사는, 주정부 변호사 감독협회인 State Bar  
of California 에서 유산계획, 신탁 그리고  
상속법의 공인전문변호사 (Certified Specialist)  
로 지정되었습니다. Certified Specialist 의 자격  
조건은, 풍부한 유산계획 경험이 있어야 하고,  
폭 넓은 지식이 요구되는 높은 경쟁율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그의 실적을 잘 아는 변호사들  
로부터 추천을 받아야만 Certified Specialist 로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정후에도 광범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김준법률사무소는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재산관리에 관한 기사를 발표해  
왔습니다. 또 여러 번 라디오 방송국 출연과  
세미나를 통해서 재산관리와 유언, 유산상속에  
대한 중요함을 교포사회에 알리려고 20 년간  
노력해 왔습니다.



## LAW OFFICES OF ERNEST J. KIM LOCATIONS:

(EQUITABLE BUILDING)  
3701 WILSHIRE BLVD., STE. 1130  
LOS ANGELES, CA 90010  
(800) 793-5633

(ORANGE COUNTY)  
2600 MICHELSON DR., SUITE 1700  
IRVINE, CA 92612  
(949) 975-1870

(SAN FRANCISCO)  
220 MONTGOMERY ST., STE. 1200  
SAN FRANCISCO, CA 94104  
(415) 901-5800

(SAN JOSE)  
4701 PATRICK HENRY DR., BLDG 16  
SANTA CLARA CA 95054  
(800) 793-5633

[WWW.KIMLAWFIRM.COM](http://WWW.KIMLAWFIRM.COM)  
[WWW.THECOMPLETETRUST.COM](http://WWW.THECOMPLETETRUST.COM)

### 김준 변호사 사무실 전례 실적

**전례 1.** : 고객의 남편 사망이후, 남편 전처의 자식들에게 남편  
재산이 상속될 상황이었습니다. 그 고객은 법적 권리에 대해 잘  
알지못하였고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지만 그변호사는 유산  
전문 변호사가 아니어서 잘못된 법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결과:** 고객은 포기하려다 저희에게 의뢰하였고, 그 결과, 고객은  
추가로 25 만불을 더 상속받았으며 대단히 만족해 하였습니다.

**전례 2.** 고객은 부모님이 설립한 Trust 의 수혜자였습니다.  
가족중 한 사람이 Trust 을 자신의 자녀들만을 위해 관장하여  
고객은 몇년간 Trust 으로부터 자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과:** 고객이 저희에 의뢰하여 합당히 받아야 할 모든 자금과  
모든 법정비용까지 신탁을 관장하던 가족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전례 3.** 고객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친구가 돈을 다  
갚기전에 죽어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 늦지않게 저희에게 의뢰하여 친구분의유산에  
유언검증하고 그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례 4.** 고객은 성공적으로 사업하고 있었지만 그분의  
자녀들은 그사업체 운영할 수가 없었고 만약 그 고객에게  
변고가 생길 경우, 자녀들은 그사업체의 문을 닫고 약 3 백만불  
상당의 손해를 볼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저희는 고객과 자녀들을 위해 계승 계획을 세웠고  
고객에게 불의에 변고가 생길 경우, 재산자가 그사업체를  
공정한 시장가격에 인수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